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1. 16 선고 2017나3583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1. 16 선고 2017나35834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6. 22 선고 2016가단2824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

피고, 피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7. 12. 12.

판결 선고 2018. 1. 16.

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6가단28241 판결

주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4. 12. 12. 접수 제342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. 3. 31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9행의 '보이는 점'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, 제4쪽 21행의 '다음날이라는'을 '다음 날이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이라는'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⑤ 소외회사가 2014. 7. 4.경 H으로부터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14. 7. 7. 채권최고액을 1억 3,000만 원, 채무자를 E,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 및 지상권자를 H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(이하 'H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가 2015. 4. 30.경 1억 원을 변제한 후 2015. 6. 1. 각 해지를 원인으로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, 소외 회사가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채권 양도 등 다른 담보나 변제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, H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는 즉시 말소 관련 서류를 받아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'E'이고, 채권최고액이 '1억 3,000만 원'으로 각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 준 이 사건

대여금채무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(오히려 H에 대한 채무와 달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여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)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승정

판사김희진

판사정윤택

별지